

평창군 한강 시원지 체험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(안)

의안 번호	36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2014. 11. .

제 출 자 평 창 군 수

□ 제안이유

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 제3항에 의거 평창군 한강 시원지 체험관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대한 평창군의회 동의 받는다 함.

□ 제안근거

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 제3항

□ 주요내용

1. 목적

- 한강의 시원지인 우통수에 대한 역사·문화적 가치 재조명, 상징성 복원을 위해 건립되는 한강 시원지 체험관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 민간기관(법인·단체)에 운영 관리를 위탁하고자 함.

2. 민간위탁 개요

- 위 탁 기 간 : 위·수탁일로부터 3년간
- 위탁 대상자 : 평창군에 주소를 둔 비영리 법인·단체
- 위탁사무
 - 평창군 한강 시원지 체험관 운영·관리
 - 체험료 및 이용요금 수납 등 회계업무 수행

3. 위탁시설 및 규모

- 시원지 체험관 : 건물(지하 1층, 지상 2층, 연면적 980.29㎡)
 - 전시실(776.38), 다도체험실(138.34), 사무실(65.27), 수공간(506)
 - 대지 : 4,991㎡

4. 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

- 평창군 한강 시원지 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따른 관리로서의 의무
- 군수의 승인없이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권리양도 불가
-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의 변경 또는 신축 불가
- 체험관의 운영관리 및 사업수행 관련 발생 사건·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
- 계약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탁계약 해지
 - ※ 자세한 위·수탁에 관한 내용은 위·수탁계약 시 명기

5. 추진계획

- 민간위탁 군의회 동의안 심의 : 2014. 12월
- 위탁업체 선정 : 2014. 12월
- 민간위탁 계약 및 공증 : 2014. 12월
- 위탁운영 : 2015. 1월 ~ 2017. 12월(3년간)

□ 관련법규

- 지방자치법
-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
-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

관 련 법 규

○ 지방자치법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 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 단체나 공공 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 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 하거나 위탁 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○ 평창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 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평창군의회 동의 를 얻어야 하며 기관 위임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④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 에 지원 할 수 있다.

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자치단체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제6조(수탁기관 선정)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
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,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.

제10조(협약체결등) ①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.

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, 위탁내용, 위탁기간, 예산지원액,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

○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

제22조(관리위탁 행정재산)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에 따른 사용·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·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.

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·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3.21>

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·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,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.

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 할 수 있다.

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한다.